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국내 시민단체* 종합 의견

* (가나다순) 그린피스, (재)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Reloop,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OSEAN,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1 공통 의견

① 주요 원칙

- 리우선언 원칙에 기반을 두고 환경보호를 지속가능개발의 필수 요소로 간주
- (강제적 구속력) 모든 국가가 구속력있는 책임 하에 참여할 것
- (오염자부담 원칙) 환경에 대한 비용을 내재화하고, 오염자가 오염 및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 강화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각 국가별 그간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기술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책임 부담
- (사전 예방의 원칙) 심각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 피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효율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
-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환경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해야 할 것
- (환경정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저소득층 및 저개발국 주민 등 환경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환경위험으로부터의 동등한 보호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보장
- (정의로운 전환) 플라스틱 저감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플라스틱 공급망의 근로자 (비공식 부문 근로자 포함) 및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보장
- (권리에 기반한 접근)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접근
- (세대 간 공정의 원칙)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것

2 주요 의견

□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 전반을 통틀어 감축 목표 설정

-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단계적, 시간 제한적 목표 동시 설정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조치 이외에도 원료 추출,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생애 주기에서 총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목표 수립
-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제 마련, 이행 감독과 평가 보고 체계 정립 의무화

□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및 금지

- 다회용으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정립
- 신규 폴리머 생산에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 비현실적 조건의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중단 및 생산 금지
- 유통 및 배달업체를 포함하여 EPR 제도 강화

□ 플라스틱에서 유발된 유해성 물질 저감 목표 설정

- 생산 단계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과 우발적 생성을 모두 통제
- 인체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규 폴리머 및 종류가 불분명한 플라스틱 생산 제한
-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서 방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 발표

□ 재사용 및 순환이용, 자원순환 정책 실시

- 재사용 인프라 투자 및 재사용 사업 모델 확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사용과 리필 목표 수립, 생산과 소비 전 영역에 적용
- 선별·재활용 업체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점검

- 플라스틱 생산, 가공, 재활용, 폐기처리 시설 및 사업장의 환경영향 모니터링 강화
- 기존 시행 제도의 영향력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점검 필요
- 최종 사용자 그룹을 포함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정기적 모니터링·점검 필요

2 각 단체별 의견

(가나다순)

★ 그린피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OSEAN, 노동환경건강연구소, Reloop은 UNEP에 서면 의견 제출

1 그린피스



○ 그린피스 핵심 요구사항

- 플라스틱 생산 단계적 감축 / 신재 플라스틱 생산 단계적 폐지 : 자발적 감축 효과 없음
-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
- 오염유발자에 적절한 책임 부여
-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 정의로운 전환 (제로 웨이스트, 재사용 기반 경제로의)

○ 범위

-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 폐기물 관리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플라스틱 생산 단계적 감축 목표가 포함
-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보완 및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석 연료 추출을 중점으로 로 다루어야 함
-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시간 제한적 목표(제로웨이스트 우선순위 원칙)
- 플라스틱 원료 및 전구체에 대한 석유화학 보조금 단계적 폐지

○ 원칙

- 리우선언의 원칙에 기반 : 환경 보호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 하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패턴을 줄이고, 오염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개발하며, 사전 예방 원칙이 포함됩니다.
- 리우 선언 외 고려해야 할 원칙 : 제로웨이스트 우선순위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전통 지식/원주민 전통 지식 및 지역 문화 지식 체계의 우선순위 부여, 권리 기반 접근 방식, 강력한 참여와 투명성, 낙후된 국가들의 상황 및 어려움에 따른 필요 고려.

○ 추가 고려 사항

- 각국 대표단,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시간 제한적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 필수
 - 기온 상승 1.5°C 이내로 유지 하려면 플라스틱 75%이상 절감 (Pacific Environment 보고서)
 - 이 달성을 위해 명확한 목표 기한을 정해 플라스틱 생산 단계적으로 절감 필요.

- 이는 당사국 모두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각국 국내 입법을 통해 이행 + 국가별 과거와 현재 플라스틱 생산량에 비례하여 공평하고 차별화 된 의무와 목표 설정 필요
- 각국 대표단, 시간 제한을 갖는 플라스틱 생산의 단계적 감축 목표에 대해 제로 드레프트(Zero draft)에 포함 촉구
- 포함 사항: 기준 연도/목표/단계적 감축 일정/환경 및 인간 건강과 양립할 수 있는 생산 수준 /국가별 모니터링 및 보고의 의무화/ 감축 동결 및 단계적 감축 일정과 목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협약 과학기구의 역할

- 제로웨이스트 우선순위 준수 및 운용

-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량 절감과 폐기물 제로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제로웨이스트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야 함.
- 제로웨이스트 우선순위의 활용과 실행을 인센티브로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수립 해야 함
- 재사용(Reuse)와 수리(Repair)에 대한 목표와 지침 요구 +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 보고 의무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 요구

- 저탄소, 폐기물 제로, 재사용 기반 경제로의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 보장

○ 추가 고려 사항

- On intersessional work(회기간 논의)

- 업스트림 단계의 조치에 중점: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와 폴리머 및 제품 단계적 감축 기준 마련이 포함.

② (재)기후변화센터

- 바젤협약(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금지)보다 강력한 규제 강화 필요
 - ‘21.1.1일, 178개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에 서명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HS코드 3915)이 국가 간 이동
 - * (일본→OECD 비회원국) ‘21.1월 2,200만kg/월에서 ‘23.3월 기준 4,260kg/월로 증가¹⁾
 - * (영국→튀르키예) ‘21.6월 50만/kg에서 ‘23.3월 1,190만kg/월로 증가
 - BAN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21년 한 해에만 31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특히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어있는 폴리염화비닐(PVC) 폐기물 110톤 수입
-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정의화 및 생산 규제
 -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하여 개념을 명확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제 정립
 - 불필요한 플라스틱 규제 등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 규제 및 국가별 의무 보고 체계 정립 의무화
 -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Control→reduce→phase out 단계적 접근. 플라스틱 생산 플랜트 신설 ban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 소비자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한 일반적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료 부과 및 대체재 개발을 위한 R&D 투자로의 선순환 구조 유도
 - EPR 제도 대상 품목의 소비자가격에 포함되는 재활용 분담금과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분담금 의무 부과
 - 단,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한 활용 등을 논의하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에 지속 투자 필요
-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 모니터링 강화
 -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폐플라스틱 처리 마지막 단계에서의 관리 인정 필요
 - 단,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한해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인정 하에 처리 시설 및 사업장의

1) 국제무역 통계 자료(‘23.8.21. 기준)

‘21년 기준, 비 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다수출 국가 : 일본>미국>네덜란드>독일>호주>벨기에>영국 순

환경영향 모니터링 강화

○ HAC 우려 폴리머에 ABS 플라스틱 추가

- 폴리스틸렌(PS) 보다 2배 많은 유해가스(스틸렌, 벤젠, 에틸벤젠)를 발생시키는 ABS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필요
- 국내에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3개사에서 연간 187만톤 생산하고 있는 만큼 대체제 개발 필요

○ 문제 플라스틱에 종류가 불분명한 혼합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추가

- 혼합된 종류를 알 수 있다면 재사용이 용이하지만, 식별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류가 불분명한 혼합 플라스틱 규제 필요
- 바젤협약 개정안에서는 단일 재질로 되어 있거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만 국가 간 이동을 수용하고 있지만 혼합 플라스틱 생산 자체 규제 필요

○ 기타

-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가능성, 수리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및 가이드 구체화
-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순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품 디자인 설계기준 정립

○ (Template A) 제안범위, 다룰 유형(물질, 재료, 제품, 행동 등)

- 플라스틱 조약의 범위

-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모든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 이는 조약의 통제적 조치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함
- (자원 추출/채취 단계) : 자주 추출되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를 통제해야 함. 수은 및 과불화화합물 PFAS와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에 대한 통제도 포함
- (생산 단계) : Polymer중합체 등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 그리고 우발적 생성 모두를 통제하는 내용을 조약에 포함. 필수적이지 않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생산된 플라스틱이 유해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실히 해야 함
- (물질 재활용 단계) :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통제
- (최종 폐기 단계) :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하며, 또한 바젤 협약에 의거,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함

○ (Template A) 협약 실현을 위해 설치될 기구에 설정할 원칙

- 원칙: 환경 정의, 공통적인 동시에 다양한 책임, 오염자 부담 원칙, 예방 원칙, 일반 대중의 참여

- (환경 정의) : 취약한 인구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원칙;
- (공통적인 동시에 다양한 책임) : 리우 선언 7, 모든 국가가 세계적 환경 파괴에 대처할 책임이 있지만, 각 국가별로 그간의 역사적 책임, 그리고 각 국가별로 부담 가능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
- (오염자 부담 원칙) : 리우 선언 16, 환경에 대한 비용을 내재화하고, 오염자가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원칙
- (예방 원칙) : 리우 선언 15, 심각하거나 혹은 비가역적인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예: 스톡홀름 협약)
- (일반 대중의 참여) : 리우 선언 10, 환경 문제는 관련된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하였을 때 가장 적절히 처리된다는 원칙

○ (Template A) 추가 고려사항

- INC-2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른 관련 조언, 제안 또는 우선순위
- 제안: 권리에 기반한 접근 방식, 세대 간 공정의 원칙
- (권리에 기반한 접근 방식) : 인권 기준, 특히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접근 방식;
- (세대 간 공정의 원칙) :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 (Template B) Contact Group 1

- 플라스틱에서 우려되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중합체 및 제품
- 협약이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평가하기 위해, 회기간 동안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이 국가 및 지역에서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해 맵핑해야 함. 이는 협약에서 통제해야 할 화학 물질과 화학물질 그룹에 관한 최초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 또한 플라스틱의 금지, 제한, 친환경 기준, 투명성 및 추적 조치 등 관리에 대한 경험이 포함
- 순환성 및 재사용 디자인:
 - UNEA 결의안 5/15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향후의 국제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 효율성 및 순환 경제 접근 방식 등, 무엇보다 제품 디자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요구
 - 회원 국가들은 회기간에 1)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플라스틱 재료의 수명을 늘려서 폐기물 생산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2)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하며 미세 플라스틱 생성 및 방출 가능성이 적어지는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4 녹색연합

○ 플라스틱 산업 전환의 로드맵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주요 생산국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일회용품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생산 단계에서의 자원 사용 총량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함.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을 위해서는 생산 단계 폐기물 발생 억제해야 함. 이미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목표를 높이겠다는 세부 계획을 이행해야 함
-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더불어 다회용품 사용의 전환 목표, 재사용과 리필을 통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을 통해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의 방향과 세부계획 준비를 토대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

○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대한민국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2차 서면의견서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 재료의 사용 장려할 계획임. 지난해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하겠다고 발표,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전환 확대와 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함
-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바이오 기반 원료가 환경에 미치는 이익의 평가가 확인되어야 함
-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익하다는 기준에 대한 평가가 확인되어야 함.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대규모 경작에 따른 토지 사용과 식량 확보의 문제, 식량유전자 변형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메탄가스의 생성, 독성 잔류의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 또한 환경적 이점을 보유하고 퇴비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절한 바이오 폐기물 수집·처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산업적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환경 유출이 불가피하여 환경오염·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등에 대해 생분해 플라스틱 집중 활용 유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유출 불가피한 품목에 대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보다 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이 우선 강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할 예정이며, 산업적 퇴비화를 위한 별도의 처리시설 또한 입지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장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위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재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5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고려할 원칙

- 플라스틱 오염을 플라스틱 생애 수명주기에 걸쳐 종식 → 원료 추출과 생산과정 포함
- 플라스틱 오염은 석유화학원료의 추출, 생산, 운송, 소각 및 폐기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생애 전체에 걸쳐 발생하므로 원료 생산 단계부터 규제 조치가 필요
-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과감한 감소 목표 수립과 이행 감독
- 신규 폴리머 생산량의 단계적 축소
-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보조금 종료
-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로드맵 설정과 이행
-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유해한 플라스틱 생산과 첨가제 사용 제한 및 금지 (비스페놀류, 과불화화합물, UV 안정화제, 프탈레이트, 난연제 등 화학물질군 관리)

- 잘못된 해결책 → 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마련
-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대체재(바이오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생연료, 플라스틱 크레딧처럼 플라스틱 규제 효과가 미약하거나 유해하거나 잘못된 해결책 반대
- 재사용 인프라에 투자하고 재사용 사업 모델 확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사용과 리필 목표 수립하고 생산과 소비 전 영역에 적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안전한 자원순환 구축
- 플라스틱이 인간과 환경 건강에 해를 끼치는 원인이라는 명시적 진술
- (화학적) 재활용이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명시적 진술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독성 첨가제 금지
- 판매 전 플라스틱 제품의 독성 테스트 의무화

○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국내 정책 제안

-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일회용품 규제 정책 시행
- 2030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 차질없이 시행 : 물티슈 제외, 장례식장 적용 제외
- 규제 유예 철폐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실시

- 3개 이상 품목 묶음 포장 금지, 농산물 묶음 포장 규제 (프랑스는 1.5킬로 이상 과채류 포장 판매 금지)

- 재사용 인프라 구축
 - 배달용기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독일 신포장재법)
 - 재사용 리필 시스템 지원, 인프라 구축 (재사용 유리병, 유리병 보증금제 확대 실시)

-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 실시
 - 재활용 등급제 : 재활용 어려움 분담금 자체가 미약해 할증 20%가 추가되어도 별 효과가 없음, 또한 페트병 등 일부 품목 제외하면 할증 적용이 되지 않음. 재활용 어려움 포장은 재활용 용이한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방향 추진
 - EPR 10억원 미만 업체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많음. 사용 금지된 PVC 재질의 경우 업체 중 90%가 사용, 유통 및 배달업체 EPR 제도 포함
 -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중 의무화
 - 플라스틱세(분담금) 상향 조정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담금은 kg 당 약 100-200원 선, 유럽연합의 경우 1,100-1,200원 선)

○ (Template A) 제안범위, 다룰 유형(물질, 재료, 제품, 행동 등)

- 제안 범위

-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ILBI)의 범위는 UNEA 결의문 5/14를 따르도록 함. 결의문에 따르면 ILBI는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며, 해양 환경의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
- (해양 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 조화로운(harmonized) 표준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과 영향을 규명하고, 정책 개발에 기반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해양 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수적

- 원칙

- ILBI의 원칙은 UNEA 결의문 5/14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참고. 이미 참고할 만한 여타 환경 협약의 주요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바, 협의 시간이 제한적인 IBLI의 원칙을 추려나가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이미 논의된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에 담길 구체적인 사안을 꾸려야 할 것
- (예방의 원칙) :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명을 지속하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음. 플라스틱 문명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이는 담대한 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
- (재난성 사건에 대한 긴급 대응의 원칙) : 플라스틱 원료인 플라스틱 펠렛이 해사 사고로 유출되는 경우, 기름유출 오염에 준한 긴급 대응 해야 함. 기름유출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되지만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름유출보다 더 심각한 재난. 플라스틱 펠렛의 생산, 유통, 공급자들이 누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국제 공조 등의 책임있는 대응을 명시
- (오염자 부담의 원칙) :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인류 전체가 받고 있으나, 플라스틱 산업계는 플라스틱에 기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득자 부담의 원칙으로 이해 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하는 산업계가 근본적인

오염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책임을 할당하는 것은 윤리 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 (Template B) Contact Group 1

- 해상 기인 플라스틱 오염 : 방치, 유실 또는 투기된 어구(ALDFG)

- 수산업에서 발생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폐어구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협약 추진 과정에 포함해야 함
- 방치, 유실, 투기된 어구(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ALDFG)는 어선어업과 양식업에서 발생. 기존의 논의는 어선어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양식업에서 기인한 폐어구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시급
- 어구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직접적이므로 적극적인 대응 시급. ILBI 논의는 전반적인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의 맥락에서 플라스틱 어구의 디자인 개선, 대체재 개발 등을 포함
- 현재 폐어구의 발생예방과 피해 저감 대책은 IMO나 FAO 등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으나, 폐어구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파편적이며 강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
-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모두를 포괄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어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법으로 효과성 있는 강제적 제도 필요

- 제도

- IUU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처벌
- 어구 충돌(gear conflict)로 인한 유실 방지를 목표로 어업 공동체 간 조업 질서 정립
- 플라스틱 어구의 생산과 사용 자체의 근원적 감축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강화
- 재사용 및 수리가 용이하며, 유실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어구 디자인 개선
- 유실 어구 신고 및 사용 어구 회수의 의무화
- 사용이 끝난 어구를 어업인이 쉽게 모을 수 있는 항만 수용 시설의 확충

7 (사)자원사회순환연대

-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기업 차원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의 두께 감량, 플라스틱 받침대 제외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필요
- 플라스틱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부담금의 현실화 필요
 - EU는 1톤당 약 800유로(약 백만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톤당 약 6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폐기물부담금만 부담하고 있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 적음
 -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앞장서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활용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우리나라 재활용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선별업체나 재활용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고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별업체나 재활용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야 함. 업체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기술 및 세제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감량 및 깨끗한 분리배출을 위해서 국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교육 필요
 - 예를 들어 현재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대부분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많은 홍보가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홍보는 줄어들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 또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과 교육은 항상 지속되어야 함
- 지금까지 시행된 제도가 얼마나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필요
 -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정책만 어느 정도 지켜져도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의외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사]환경운동연합

- 제품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 및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 최소화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및 생산
 - ① 화학적 유해·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원료 사용 최소화
 - ② 제품 수명 확대 :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 ③ 재사용 및 수리 장려
 -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 감축 의무화
 - ① 생산 단계에서의 감량 수치 및 재사용 비율 명확하게 제시
 - ②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체품의 사용촉진
 - ① 생분해성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외의 종이,유리병 등의 대체품 사용확대

-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시장 활성화
 -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① 용기·포장재 등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대
 - ②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체 폴리머 활용
 -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
 - ①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 ② 기술 개발·연구 지원·노동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재활용 시장 현대화
 - 열분해 최소화 및 재활용·재사용 제도 확대
 - ① 열분해 시 다이옥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등 위험 존재
 - ② 열분해로 얻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할 수 없음

- 시민사회 소통 확대
 - 시민사회 소통 구조 및 의견 수렴 기구 확보
 -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로드맵 마련

8 Reloop

○ 범위

- 재료, 제품, 폐기물 및 오염의 시작과 끝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다른 재료물질과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가능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상기하려는 것입니다.
- 여하 정책 및 법률의 다른 법적도구에서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플라스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를 들어 폐기물의 잘못된 관리 문제 등과 같은 일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범위'의 문제는 주요 목표들과 플라스틱 뿐 아니라 그 외의 물질에 대한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고심해보아야 합니다.

○ 원칙

-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ILBI)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이유는 자발적인 조치가 부족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ILBI)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발적 조치는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
-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국가행동계획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국가행동계획이 효과적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조건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강력히 비자발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oop Platform은 EU 회원국을 구속하는 EU 회원국 내 폐기물 관리 계획(WMP)을 검토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현 격차'에 대한 언급은 일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구현격차'란 폐기물 관리 계획 상 명시된 의도와 현장에서 관찰된 결과 간의 사이의 격차(때로는 거대하게 벌어진 매우 큰 차이)를 뜻합니다. 이 격차는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이 격차는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국가행동계획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의해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면 다른 재료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플라스틱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체 재료 및 제품에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ILBI)은 다양한 제품, 포장 형식 및 구성 화학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합니다.
- 단계적 폐지 대상이 아닌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수거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연구는 World Bank의 연구로, 지구상의 20억 인구에게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함을 시사합니다. 따라

서 플라스틱의 전면 금지의 의도가 아니라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ILBI)의 우선 순위는 광범위한 조항이어야 합니다. 수명주기가 완성된 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함께 양질의 편리한 수거의 필요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약어는 SHAWS[지속 가능하고 (sustainable), 총체적이며 (holistic), 적절한 (appropriate) 폐기물 (waste) 서비스 (services)]입니다.

- 1차적 및 2차적 플라스틱의 모든 제조 시설과 플라스틱을 포장/제품으로 전환하는 모든 시설에 플라스틱 조각 및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생산자가 상기 시행(잔류 폐기물 품목의 정화 포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 및 포장에 기인하는 비율에 따라서 해당 생산자의 제품 및 포장으로 귀속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해당 생산자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
- 현재 강과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어구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원양 및 하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항만오염물저장시설 포함, SHAWS 시행)
- 금지되지 않은 (잠재적) 배출원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 추가적인 고려 사항

- 목표 대상 : 생산자가 지원하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 대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성과 측정 : 무엇보다 재활용률을 측정하는 방식을 수립해야 하며, 제품 및 포장의 (소비 후) 재활용된 내용물의 측정 방식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 무역 관련 조치 :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ILBI)은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들이나 여하 연결 의정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 불이익에 놓이지 않도록 협약가입국들로 하여금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